

2019년도

# 동호회활동 지원 계획(안)

2019. 5.

한국지하수지열협회  
(사 무 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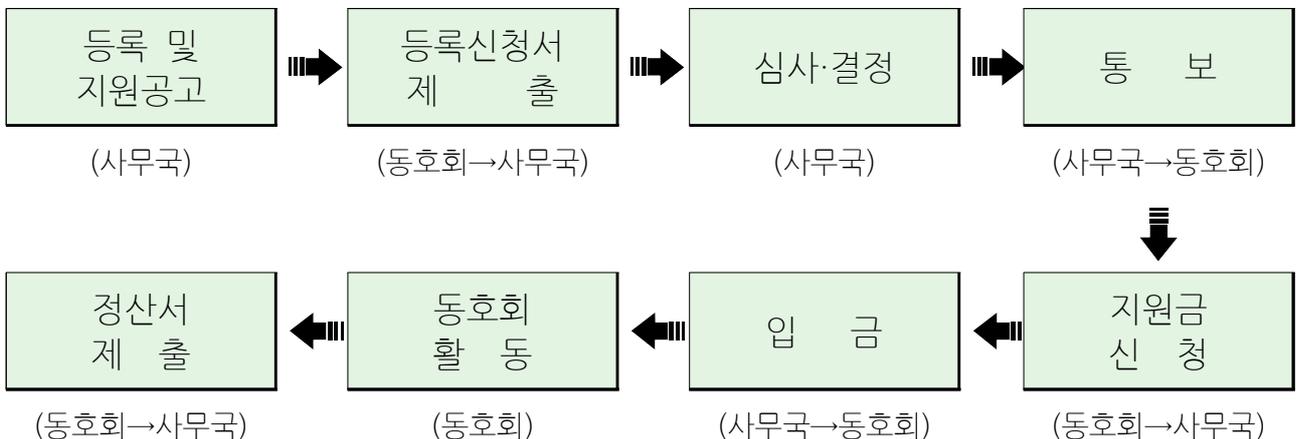
# 2019년 동호회활동 지원 계획(안)

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회원(사무국 임직원포함) 간의 친목 증진 및 건전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아울러 동호회활동을 통하여 우리협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이 되고자 함.

## I

## 개 요

- 동호회 등록 및 지원 공고 : 2019. 5월중
- 등록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- 등록방법 : 등록기간 내 동호회 등록 신청서(별첨 1) 작성·제출
- 심사결정 : 회비미납자확인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·결정
- 통 보 : 등록여부, 지원금 신청 및 정산방법 등 통보
- 지원금신청 : 지원금신청서(별첨 2)를 작성하여 신청
- 정산서제출 : 활동계획에 따른 정산서(별첨 3)를 작성하여 제출
- 절 차 도



※ 지원금 신청에서 정산서 제출은 동호회 활동이 있을 때 마다 반복함.(지원금 최대한도액 범위내)

## II

## 동호회 운영 방침 및 지원계획

### □ 동호회 운영 방침

- 동호회 성격에 따라 조직 구성 및 활동은 자율적으로 실시
- 동호회 운영경비는 자체회비와 예산지원으로 총당하되, 예산지원은 동호회당 해당연도 지원금 한도(예산액) 내에서 지원
- 동호회는 회원수 20명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에 한해 회장 승인을 받아 매년 등록(별첨 1. 등록신청서)
  -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없는 단순친목, 소모성·개별적 모임은 등록 배제
- 당해년도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방침을 위반한 경우 다음년도 예산지원에서 불이익 조치
  - 동호회활동 지원금은 당해연도 책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- 등록신청 동호회가 많은 경우 회원수, 활동상황 등에 따라 선별 지원가능
- 동호회 회원은 정회원 및 사무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함.
  - 회원은 회원사의 대표 1인에 한하며, 회원1인 1동호회만 회원수로 인정.
  - 심사·결정일 기준 회비미납자는 회원으로 불인정

### □ 2019년 동호회 지원 계획

- 예산액 : 9,000천원
- 배정기준
  - 동호회 당 지원금 : 최대 3,000천원/년 이내
  - 최대 동호회 수 : 예산범위 내에서 향후 조정할 수 있음
  - 동호회 당 지원 배정금액을 정하여 활동계획에 따라 지원
- 동호회 활동계획 수립 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계획한 동호회 우선 지원
- 동호회 지원금 신청은 활동일 10일전까지 행정팀(회원담당)으로 신청(별첨 2. 동호회 지원금 신청서)

### Ⅲ

### 행정사항

#### □ 동호회 활동비 집행 기준

##### ○ 집행 기준

- 식 비 : 30,000원/1인 한도가 원칙이나 활동 내용 및 당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(실비정산 가능)
- 숙박비 : 50,000원/1인 이내로 하되, 참가인원,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(실비정산 가능)
- 기타 운영 경비 : 실비정산(영수증 첨부 必)

##### ○ 사용 범위

- 동호회 활동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, 운영경비, 유지관리비 등
- 비품(50만원이상) 구입은 불인정

##### ○ 정산은 사용내역 및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(별첨 3. 동호회 지원금 정산서)

- 정산서 제출은 지원금 집행 후 30일 이내
- 정산서를 기한내 미제출 또는 제출 거부할 경우 차후 지원금 신청 불가 및 차년도 등록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, 해당 동호회 임원(회장, 총무, 감사)은 동호회 회원수에서 불인정

##### ○ 제출처 : 우리협회 사무국 행정팀 회원담당자

- 별첨 : 1. 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 
2. 동호회 지원금 신청서 1부  
3. 동호회 지원금 정산서 1부